



의안번호	제62호
------	------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1. 5. 17.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번호	제62호
---------	------

제출연월일 : 2021. 5. 17.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개정이유(배경·필요성)

-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769호, 2020.12.29.)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의 세세목명 명칭 변경

지방세법 개정전		지방세법 개정후	
세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세목명	납세의무자
균등분	개인(세대주)	개인분	개인(세대주)
균등분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사업자
균등분	법인사업자		
재산분	사업자	종업원분	사업자
종업원분	사업자		

나. 개인분 세율을 1만원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 변경(논산시 시세 조례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1) 「지방세법」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3. 19. ~ 2021. 4. 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세정과 (041-635-3632)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세율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세 무 과 장	허 원
	재 산 세 팀 장	소 재 봉 (746-5451)

제7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
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
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
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
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
물의 소유자는 「지방세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
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없음

3. 작성자

세무과장 허원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 8. (생략)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각 호 생략)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각 호 생략)

③ 생략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